

광주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2가단51479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이삼(123)

담당변호사 심재훈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길

변 론 종 결 2023. 7. 11.

판 결 선 고 2023. 8. 22.

주 문

-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2019. 12. 4. 체결된 채권양수도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28,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이에 2019. 12. 4. 체결된 채권양수도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소외 회사가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소외 회사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보증번호 : D

나) 약정일 : 2017. 05. 15.

다) 보증원금 : 금 297,000,000원정

라) 피보증인 : 주식회사 B 대표이사 E

마) 보증기한 : 2017. 05. 15.(이후 2020. 05. 14.까지 연장)

바) 보증방법 : 개별보증

사) 대출과목 : (기운)일반자금대출(일시상환)

아) 대출은행 : C은행 F센터

2) 소외 회사의 연체로 2019. 12. 27.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신용보증약정서 제6조

제1항에 의거 C은행에 보증채무를 부담한 후 소외 회사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20가단514567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21. 7. 20. “소외 회사는 피고 E과 연대하여 301,090,389원 및 그중 300,793,016원에 대하여 2020. 4. 20.부터 같은 해 7.

16.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1. 8. 14.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양수계약

1) 소외 회사는 2015. 5. 6. G · H으로부터 광주 북구 I, J, K, L(M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으로 정하여, 이후 2015. 12. 17. 위 G 등으로부터 광주 북구 N 필지 2층 일부를 5천만 원에 각 임차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9. 12. 4. G · H으로부터 반환받을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억 5천만 원 중 5천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되(이하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G 등에게 채권양도통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그 내용증명은 그 무렵 G 등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와 O에 대한 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채권 재양도

1) 피고는 2021. 6. 8. O에게 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채권(5천만 원)을 양도하고, 2021. 6. 14. G 등에게 채권양도통지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의사표시는 그 무렵 G 등에게 도달하였다.

2) O는 2021. 6. 15. G 등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채권 중 28,480,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 을 제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의 G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절차 신청 당시인 2020. 2. 26.경 제3채무자(G 등)의 진술서의 확인을 통해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의 존재 및 사해행위에 알게 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2022. 4.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20. 2. 26.경 제3채무자(G 등)의 진술서를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그때 원고가 이 사건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의 존재는 알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해행위취소의 원인을 모두 알았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참조).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이 체결된 2019. 12. 4.경 무렵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아직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으나, 2017. 5. 15.경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은 체결되어 있었고, 채권양도일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2019. 12. 27.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소외 회사의 채무초과

앞서 든 증거에 이 법원의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대한 사실조사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채권 이외는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 소외 회사는 당시 C은행의 대출채무(잔액 3억 3천만 원, 을 4-1호증 참조)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채권중 일부를 피고에게 처분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와 전득자인 O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행위 당시 소외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사실 및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행위로 인해 소외 회사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추정을 뒤집고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및 수익자나 전득자가 취득한 이익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한편 전득자 O가 임대보증금 28,480,000원을 회수해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O가 수령한 28,48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4) 소결

피고와 소외 회사간 채권양수도계약을 취소하고1),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28,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소연

1) 원고로서는 채권을 보전하는데 위 범위만큼 지장을 받는 것으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위 채권양수도계약 전부를 취소한다.